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나7001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항소인 A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울

담당변호사 정문선

변론 종결 2020. 9. 16

판결선 고 2020. 10. 21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가단2283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57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원고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3호증(원고 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의 영상을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광판사 박상수판사 정은영